
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제1조 (목적)

본 실천사항은 원사업자(이하 "당사"라 함)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하도급법"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기본원칙)

본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·운용하는 내부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3조 (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)

1.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(외주) 담당임원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.
2.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구매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, 외주관리 팀장, 공정거래 추진부서장 등 관련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품질 등 유관 부서장 참여 및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3.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1.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.

제4조 (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)

1.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고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진행할 수도 있다.
2. 내부 심의위원은 매년 1회 조직 변경 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연중 조직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하도급(외주) 담당임원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.
3. 내부 심의위원회는 당사의 직전사업년도 하도급거래금액에 대한 수급사업자별 당해사업년도 개별 하도급거래계약(예상)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
하도급거래금액	하도급거래계약금액(비율)
1,000 억 미만	10 %
1,000 억 이상 5,000 억 미만	5 %
5,000 억 이상 1 조 미만	2 %
1 조 이상	1 %

※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

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 -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 -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 -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 -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-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4.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 5.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 6.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 7.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(예시. 인사상 불이익 등)를 취하여야 한다.
 8. 심의 및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"안건 없음"으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할 수 있다.

제5조 (사후 관리)

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'21. 11월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'22. 04월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

1. 회의록 양식 다운로드
2. 심의 항목별 운영 가이드 다운로드
3. 심의위원회 운영조직도 다운로드